

#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,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나. 공개경쟁신규임용, 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8조)
- 다. 신규임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8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으로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험, 임용 등 인사절차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  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